

코스피 7000 시대, “코리아 프리미엄” 안착을 위한 “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” 세무조사(2차)

① 주가조작, ② 터널링(자산·이익 편취), ③ 불법 리딩방, 총 31개 업체

1 세무조사 추진배경

- 중동전쟁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, 코스피는 6000선을 돌파한 후 견고한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며 시장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.
 - 이는 상법 개정을 비롯한 주주가치 제고 노력과 함께,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·감독 체계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.
- 하지만, 주식시장의 정상화 흐름 속에서도, 일부 대주주가 불투명한 거래로 상장법인의 이익을 편취하며 지배력을 확장해 온 불공정 관행이 남긴 불신과 우려는 여전히 건전한 시장 재도약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,
 - 특히, 주식시장에 암약하며 허위공시·미공개정보 등으로 부당한 시세차익을 챙기는 주가조작 세력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.
- 이러한 문제는 기업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및 투자자 신뢰 저하로 이어져, 주가 하락 및 시장 교란을 야기하고 있어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.
- 이에 국세청(청장 임광현)은 국내주식 장기투자 촉진,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운영기조에 발맞춰,
 - 지난해 7월 실시한 ‘코리아 디스카운트’를 유발하는 「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(27개 업체)」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어, ‘코리아 프리미엄’ 안착을 위한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한다.
 - 이번 조사는 ① 주가조작, ② 터널링(자산·이익 빼돌리기), ③ 불법 리딩방 행위를 저지른 총 31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.

2 세부 추진내용

[유형 1] 주가조작과 회계사기로 이익을 챙긴 업체 : 11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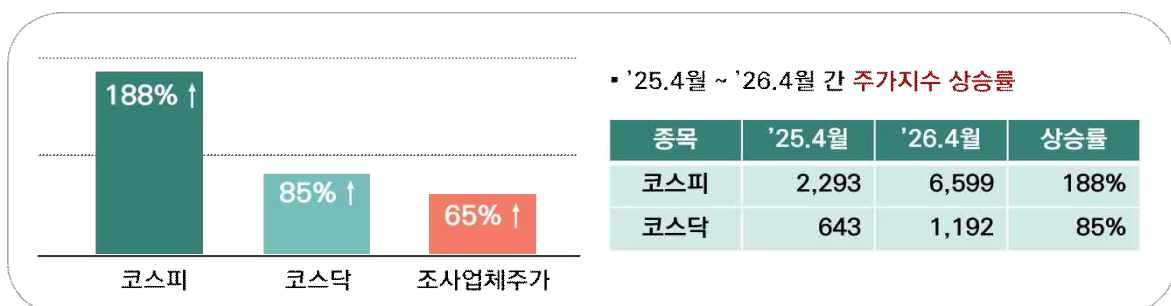
- 첫 번째 조사대상은, 허위정보와 외형 부풀리기 등으로 주가를 띄우고 보유한 주식을 시장에서 소액주주들에게 떠넘긴 주가조작 업체이다.
 - 이들은 ‘신사업 진출’, ‘상장 임박’ 등을 허위로 홍보하여 일반투자자를 유인한 뒤, 페이퍼컴퍼니 및 차명계좌를 통해 미리 매집해 놓은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은닉하며 세금을 탈루했다.
 - 이 과정에서 한 업체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해 매출은 ‘뺑튀기’하고 가공의 원가를 계상하는 ‘회계사기’를 자행하며, 회사 소유 고가 주택을 대표이사에게 무상 이전하고 대여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빼돌렸다.
 - 한편, 또 다른 업체는 양호한 경영실적을 거두고 있음에도, 회계감사 시 자료를 고의로 미제출하여 감사의견 미달로 상장폐지 되었으며,
 - 상장폐지를 앞둔 와중에도 회사 제조기술 등을 사주일가 지배법인으로 이전하며 대가를 미수취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이익을 분여 하였고, 소액주주들은 주가 하락 및 거래정지로 큰 손해를 입었다.
- 조사대상 업체 중 상장법인의 경우, 절반 이상이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주식거래가 정지되었고, 주가는 최대 10분의1 수준으로 폭락했다.



[유형 2] 기업에 ‘터널’을 뚫어 이익·자산을 빼돌린 사주일가 : 15개

- 두 번째 조사대상은, 금고의 바닥에 터널을 뚫어 물건을 빼내듯, 기업의 거래구조 사이에 자금유출 통로를 만들어 사주일가에게 이익이나 자산을 빼돌린 ‘터널링’ 업체 및 그 사주일가이다.
- 이들은 상장된 기업을 마치 개인이 소유한 회사처럼 취급하며, 기업의 이익을 직접 빼내거나 교묘하게 공급망에 끼어들어 ‘통행세’로 빼돌렸다.
 - 사주가 사용할 고급 음향장비 및 반려동물 용품 등을 법인이 구매하거나, 사주의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대신 부담하기도 하였다.
- 한 업체는 투자경력이 없는 사주 지인이 운용하는 펀드에 수백억 원을 투자한 뒤, 펀드를 통해 사주가 지배하는 부실기업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게 하는 방식으로 법인가금을 부당유출 하였다.
 - 한편, 다른 업체는 사주 배우자가 차린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후, 배우자가 지인을 내세워 세운 차명법인과의 가공거래로 자금을 빼돌렸다.
- 또한, 이들은 상장법인의 사업기회, ‘알짜’ 자산을 사주일가 지배회사로 넘겨 미래성장동력을 편취하는 등 기업가치를 훼손하였다.
 - 한 기업의 사주는 별도의 물적 시설이나 종업원 고용도 없이 가족회사를 세워, 사업기회를 그대로 넘겨받아 이득을 얻고도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았다.
- 이렇듯 경영의 본분을 망각한 기업은 부실화 될 수밖에 없으며, 양호한 경영실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가가 낮은 상태로 유지되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들의 몫이 되고 있다.

Ⅰ 지난 1년간 주가지수 상승률 및 조사대상 업체 주가 상승률 Ⅰ



[유형 3] 금융 취약계층의 투자금을 편취한 불법 리딩방 : 5개

- 세 번째 조사대상은, 고액의 멤버십 가입을 유도해 수십억 원의 수입을 올리며 허위 비용계상,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불법 리딩방 업체이다.
- 이들은 유튜브 등 매체를 통해 유명세를 얻은 뒤 투자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·노년층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접근하여, “추천주 300% 급등”, “3일 내 100% 수익보장” 같은 자극적인 문구로 회원가입을 종용하였으며
 - 추천주식을 알리기 전 미리 자신들의 주식 물량을 매집하고, 주가가 상승하면 회원들을 ‘물량반이(속칭)’로 이용하여 부당한 시세차익을 챙겼다.
- 이들 중 한 업체는 유료 멤버십으로 고정수입을 확보하고도 회원들에게 물량을 떠넘겨 부당이득까지 얻은 뒤, 업체 운영진 명의로 설립한 법인으로부터 동영상 제작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수익을 빼돌리기도 하였다.

Ⅰ 불법 리딩방 업체의 주요 탈세 사례 Ⅰ

- ① **[법인자금 유출] 리딩방 수입을 특관법인에게 유출하고 세액감면을 통한 탈세**
 - 甲은 불법 리딩방 (주)A를 설립·운영하였으며, (주)A를 통해 벌어들인 수십억 원의 수익을 동영상 제작대가 등 허위의 명목으로 (주)B로 이전
 - (주)B는 甲이 수익을 빼돌릴 목적으로 신설한 법인으로, 부당히 창업세액 감면을 받아 이전된 수익에 대한 법인세부담을 회피
- ② **[가공비용 지급] ‘끼워넣기’ 거래 및 가공 비용 계상으로 법인세 탈루**
 - 십만 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를 보유한 리딩방 운영자 乙은 허위·과장 광고로 회원가입을 유도하고,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단계에 끼워 넣거나 가공 비용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사자금을 유출

3 향후 추진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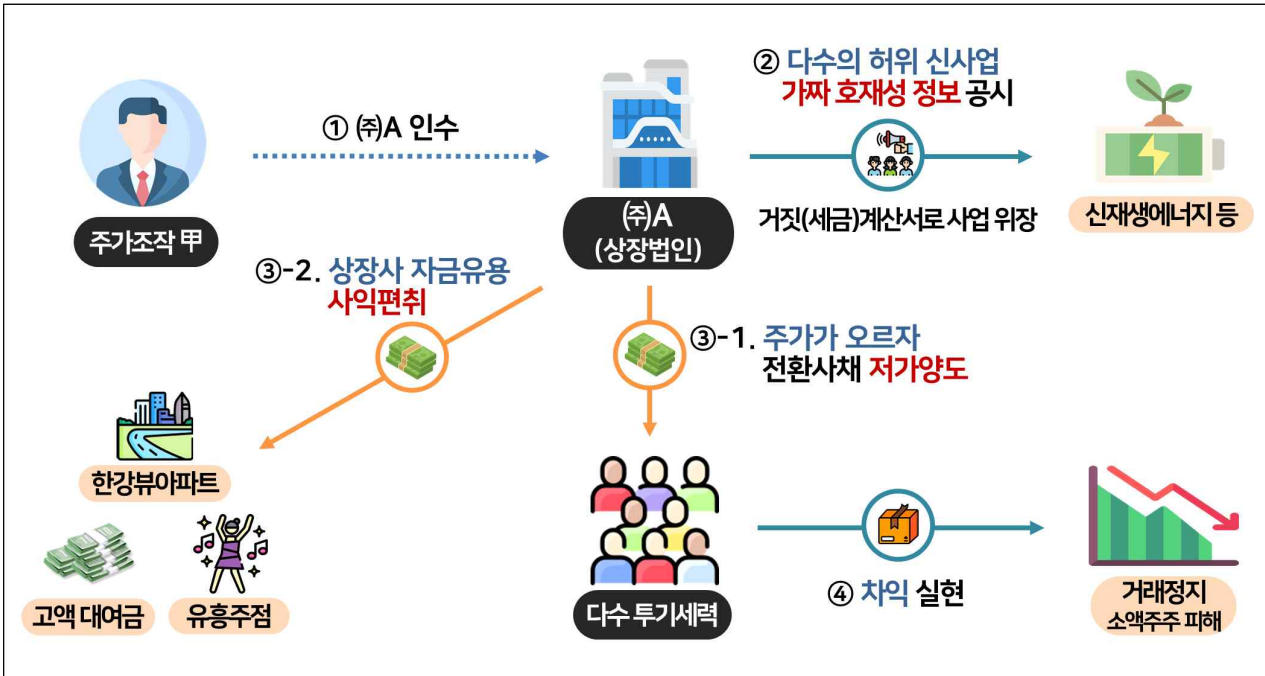
- 국세청은 이번 두 번째 세무조사에 이어, 앞으로도 주식시장을 계속 모니터링하여 추가 조사를 실시하는 등 불공정 거래를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다.
 - 특히, 조사대상 업체의 시장 교란행위 뿐만 아니라 거래과정에 얽힌 모든 관련인과 거래행위 전반을 검증하여 철저히 과세함으로써,
 -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를 통해 단 한푼의 이익도 챙길 수 없고 오히려 더 큰 세금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.
- 또한,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, 재산은닉 등 조세범처벌법 상 범칙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.
 - 이를 통해, 주식시장에 만연한 ‘기업이 번 돈이 주주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’이라는 불신의 뿌리를 제거하고, ‘규칙을 지키면 이익을 얻을 것’이라는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.
- 국세청은 앞으로도 꾸준히 주식시장의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, 금융당국 및 수사기관과도 적극 공조하여 불공정 거래에 대해 엄정히 대응함으로써,
 - 투명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주식시장이 ‘모두의 성장’이 실현되는 장으로 거듭나, ‘코리아 프리미엄 시대’를 열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.

담당 부서 <총괄>	조사국 조사1과	책임자	과 장	구성진 (044-204-3551)
		담당자	서기관	조현선 (044-204-3552)
<협조>	조사국 조사2과	책임자	과 장	오미순 (044-204-3601)
		담당자	서기관	문성호 (044-204-3602)
<협조>	과학조사담당관실	책임자	과 장	박근재 (02-2114-2700)
		담당자	사무관	이경선 (02-2114-2712)

사례 ①
[주가조작]

주가조작 세력들은 신사업 진출을 미끼로 주가를 조작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리고 회사 자금으로 호화생활 영위 (거짓세금계산서로 신사업 진출 가장, 상장사 자금 유용 등)

□ 주요 조사내용



○ (주)A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,

- 주가조작 세력 甲은 (주)A를 인수한 뒤, 허위 신사업을 가장하여 실물 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 000억 원을 수수하고 사업 여부가 불분명한 현지 법인에 투자금 000억 원을 송금하는 등 개미 투자자를 유인
- 이후, 주가가 오르자 다수 투기세력들은 전환사채를 통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누렸고, 이는 고스란히 물량 폭탄이 되어 소액투자자들에 피해

○ 이외에도, 한강뷰 펜트하우스 분양권을 중도에 대표이사에게 무상 이전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비용 처리하여 00억 원의 상장사 자금을 유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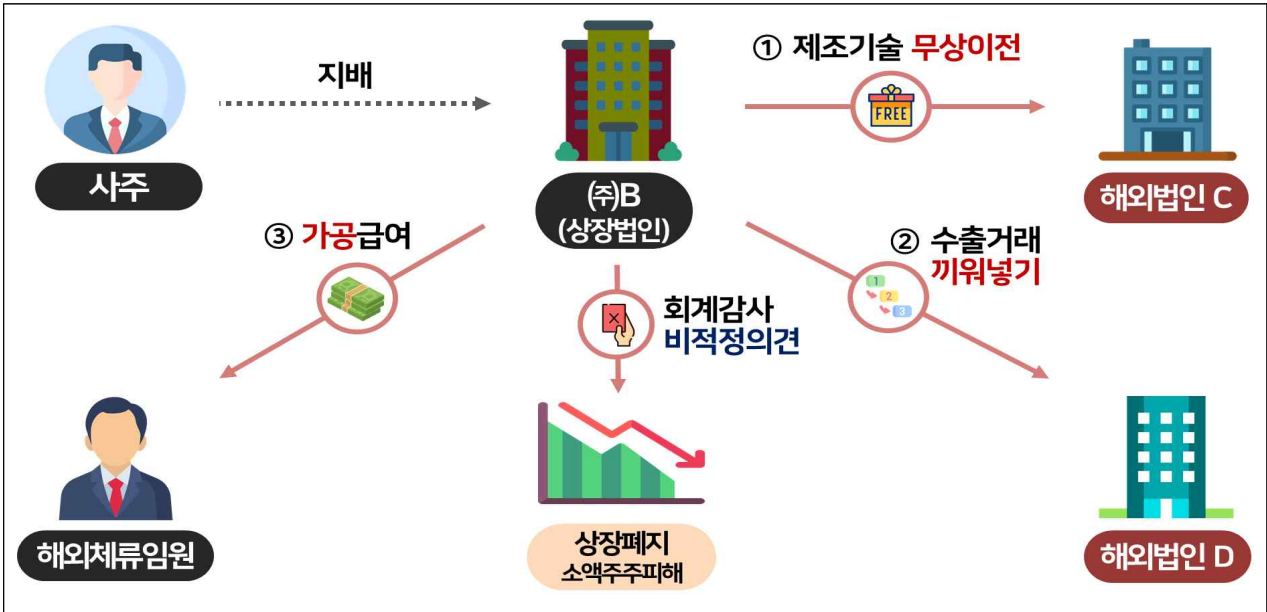
□ 조사방향

○ 거짓 호재성 정보 목적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행위, 현지법인을 통한 상장사 자금 변칙 유출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

사례 ②
(주가조작)

우량기업의 기술과 이익을 사주가 지배하는 해외법인에 빼돌리고 고의로 상장 폐지하여 소액주주 피해 유발
(회계자료를 미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의 상폐)

□ **주요 조사내용**



- (주)B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,
 - 수년 전부터 주요 생산기능을 사주가 지배하는 해외법인 C에 이전하며 제조기술 이전대가 000억 원을 미수취하고
 - 사주가 지배하는 다른 해외법인 D를 수출거래에 형식적으로 끼워 넣어 유통 마진 00억 원을 취하게 하는 방법으로 소액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사주일가가 부당하게 가져가게 함
- 한편, 이로 인해 영업 손실이 지속되고 있는 (주)B는 국외에 체류하는 임원에게 고액급여 00억 원을 지급하여 자금을 유출하였으며
 - 회계자료를 미제출하여 기준에 미달된 감사의견을 받는 방법으로 고의로 상장폐지를 추진하여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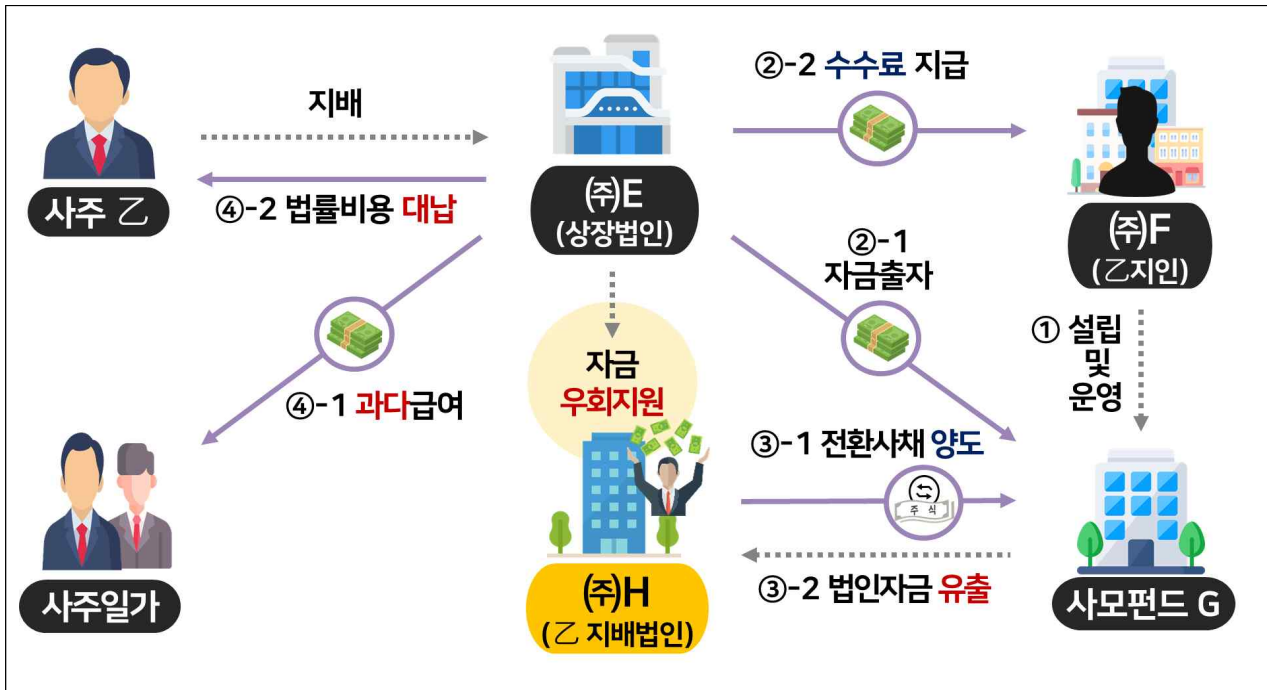
□ **조사방향**

- 제조기술 무상이전, 끼워 넣기를 통한 사주 해외법인에 부당 마진 제공, 임원급여를 가장한 법인자금 유출 행위에 대해 엄정 조사

사례 ③
터널링

투자를 가장하여 사주지배 부실법인에 자금을 지원하고, 사적비용 대납, 사주일가 과다급여 등 터널링으로 이익 제공
(결손누적으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법인의 CB인수)

□ 주요 조사내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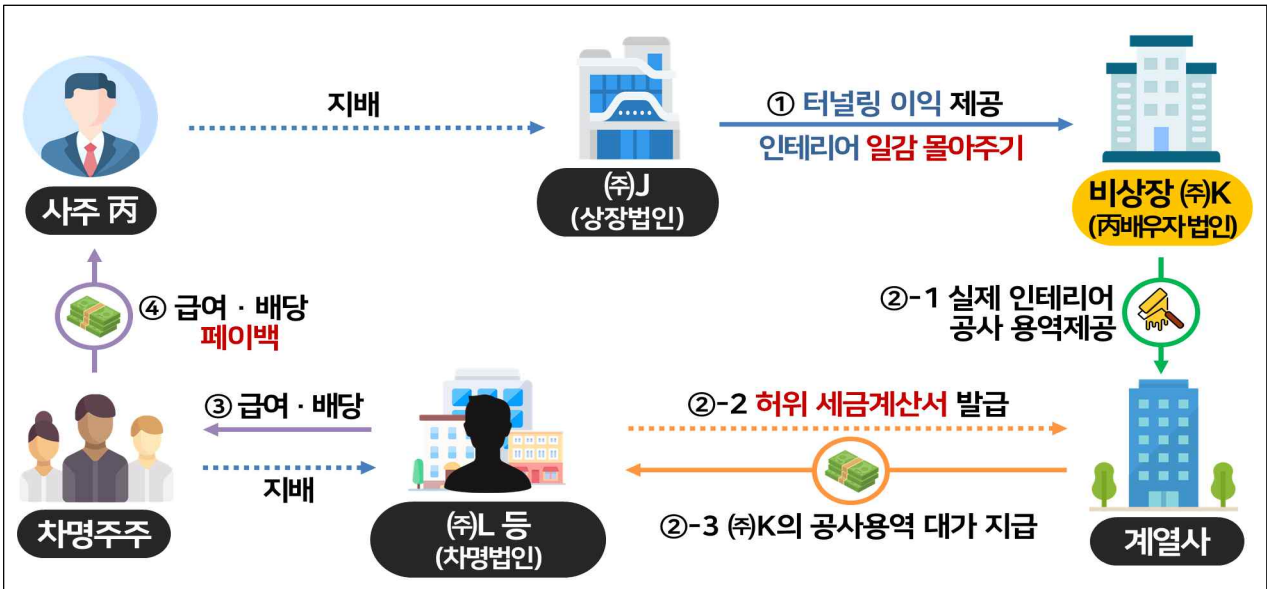
- (주)E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,
 - 사주 乙의 지인이 설립하고 투자이력이 전무한 (주)F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G에 000억 원을 투자하고, 수십억 원의 펀드 수수료를 지급
 - 동시에, 사주 乙은 펀드 G로 하여금 본인이 지배하는 부실업체 (주)H의 전환사채 000억 원을 인수하게 하여 (주)E의 법인자금을 부당유출
- 또한, (주)E는 사주 개인의 법률비용 00억 원을 대신 지급하거나, 실제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사주의 친인척에게 매년 00억 원의 고액 급여를 지급하는 등 사주일가의 사적비용을 대납

□ 조사방향

- 펀드를 통한 우회 자금지원, 법인자금 사적사용, 사주일가 고액 급여 편취 등에 대해 엄정 조사하고 실질 귀속에 따른 세금 추징

사례 ④
(터널링)
사주 배우자 명의로 설립한 비상장법인에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터널링으로 이익 제공
(배우자 명의 법인은 분여받은 이익으로 차명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거나 지인에게 허위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유출)

□ 주요 혐의내용



- (주)J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,
 - 사주 丙은 배우자가 소유한 비상장법인 (주)K에 매장 인테리어 일감을 전부 몰아주어 상장사 (주)J의 이익을 사주일가 법인에 변칙 이전
- 또한, 다수의 페이퍼컴퍼니 (주)L 등을 차명으로 설립하여 실제 (주)K가 실시한 공사를 (주)L 등이 공사한 것으로 위장함으로써 기업 자금을 편법 유출
 - 상장사 (주)J로부터 빼돌린 자금은 (주)L 등의 차명주주를 거쳐 배당 또는 허위급여 형식으로 유출하여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유용
- 결국, 사주 丙은 시장 감시가 어려운 차명법인을 내세워 상장회사 이익을 빼돌림으로써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입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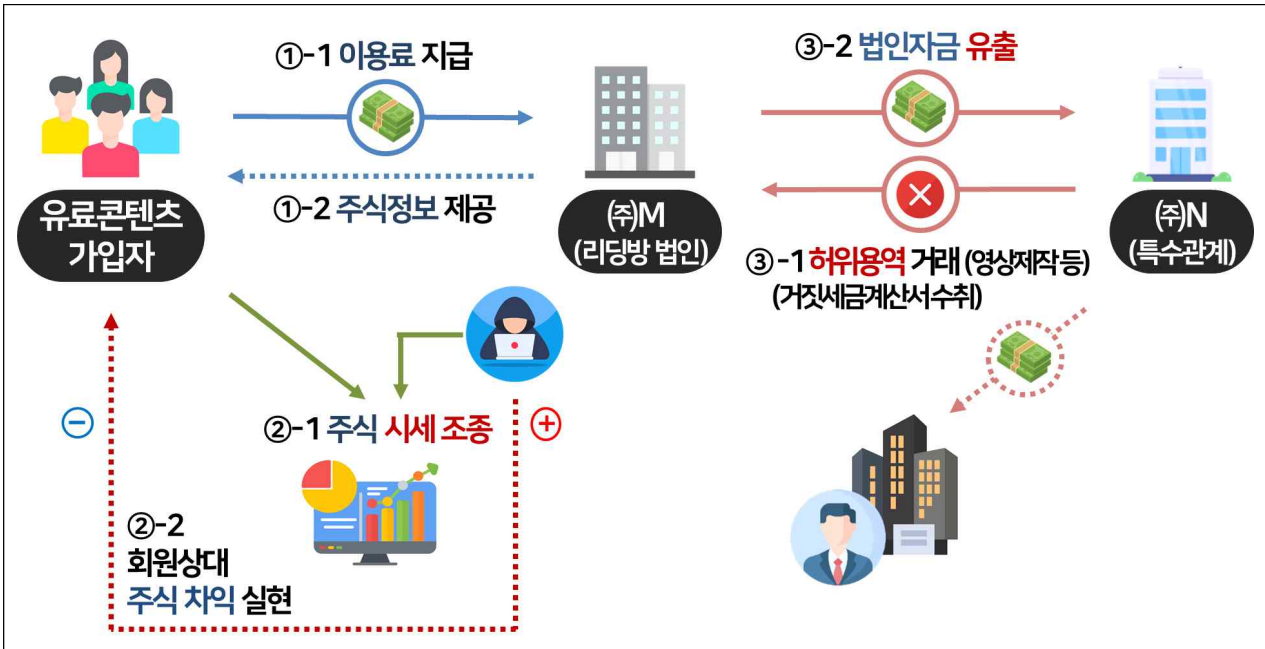
□ 조사결과

- 법인 (주)J~(주)L 등의 법인자금 부당유출 및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등 00억 원을 추징하고 사주일가의 증여세 등 00억 원 추징 및 범칙 처분

사례 ⑤
[불법 리딩방]

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한 뒤 허위 용역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자금을 편법 유출하고 세금은 축소 신고

□ 주요 혐의내용



- (주)M은 인터넷, 유튜브 등을 통해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정보 제공업 영위 법인으로,
 - 사주 丁은 사전에 특정종목을 대량 매수해두고, 유료회원들에게 해당 종목을 홍보해 대량 매수하도록 하여 주가를 끌어올린 뒤 전량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원 투자자들에게 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힘
- 한편, (주)M의 실질적 공동 대표인 戊은 (주)N을 설립하고,
 - (주)M이 (주)N으로부터 주식 관련 영상을 제공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법인자금을 편법 유출하여 자신의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함

□ 조사방향

- 가공매입 신고한 (주)M과 법인자금 부당 유출한 (주)N에 대해 엄정 조사하고, 허위 용역 거래 관련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